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 부 개 정 조 례 안 에 대 한 수 정 안

의 안 관련 번호 421

제안년월일 : 2019년 2월 26일 제 안 자 : 기획경제위원장

1. 수정이유

법에서 정관으로 직접 위임한 이사·감사의 수 이외에 시장이 임면하는 비상임이사의 자격요건까지 일괄 삭제할 경우 공사 경영 전문가들이 배제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어 자격요건은 현행대로 유지하고이사의 수만 삭제하고, 시장의 보고 및 검사에 관한 사항도 공사에 대한 관리·감독을 위해 현행대로 유지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'비상임이사 자격요건'을 수정함(안 제9조제1항).
- 나. 알법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함(안 제9조제4항).
- 다. 현행 제26조를 유지하도록 함.

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 부 개 정 조 례 안 에 대 한 수 정 안

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- 안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 -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되, 비상임이사는 해당 공사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시장이 지정하는 3급 이상의 공무원과 세무 또는 회계전문가, 농수산유통 관련분야 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한다.
- 안 제9조제4항 중 "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"를 "정관에 따라"로 한다.
- 안 제6장에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6조(보고 및 검사) 시장은 공사의 업무,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,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	수정안			
제9조(이사) ① 이사는	제9조(이사) ① 이사는	제9조(이사) ① 이사는			
<u> 상임이사와 비상임이</u>	<u>상임이사와 비상임이</u>	상임이사와 비상임이			
사로 구분하되, 비상	사로 구분한다.	사로 <u>구분하되, 비상</u>			
임이사에는 해당 공사		임이사는 해당 공사의			
의 업무와 관련이 있		업무와 관련이 있는			
는 3급 이상의 공무원		시장이 지정하는 3급			
중 시장이 지정하는 2		이상의 공무원과 세무			
명과 세무 또는 회계		또는 회계전문가, 농			
전문가, 농수산유통		수산유통 관련분야 전			
관련분야 전문가를 포		문가를 포함하여 구성			
함하고 사장을 포함한		한다.			
상임이사의 정수는 이					
사 정수의 2분의 1 미					
만으로 한다.					
② 상임이사는 사장이	②	② (개정안과 같음)			
임면하되, <u>상임 이사</u>	<u>상임이사를</u>				
<u>를</u> 임명할 때에는 임					
원추천위원회에서 추					
천한 자 중에서 임명					
한다.					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	③ (현행과 같음)			
④ 상임이사는 <u>정관이</u>		④ 정관에 따			
정하는 바에 의하여		라			
공사의 업무를 분장한다.					

현행	개정안	수정안			
제26조(보고 및 검사)	<삭 제>	제26조(보고 및 검사)			
시장은 공사의 업무,		시장은 공사의 업무,			
회계 및 재산에 관한		회계 및 재산에 관한			
사항을 검사할 수 있		사항을 검사할 수 있			
으며, 필요한 보고를		으며, 필요한 보고를			
<u>명할 수 있다.</u>		<u>명할 수 있다.</u>			

서울특별시 농수신식품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3항을 삭제한다.

제8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제2항에 따라 사장을 연임시키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제8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시장은 「지방공기업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5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사장을 임기 중에 해임하거나 임기가 끝나더라도 연임시킬 수있다.

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되, 비상임이사는 해당 공사의업무와 관련이 있는 시장이 지정하는 3급 이상의 공무원과 세무 또는 회계전문가, 농수산유통 관련분야 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한다.

제9조제2항 중 "상임 이사를"을 "상임이사를"로 한다.

제9조제4항 중 "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"를 "정관에 따라"로 한다.

제1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이사회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.

제14조제3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8항을 제3항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2조(손익금의 처리) 공사는 결산한 결과 이익 또는 손실이 생긴 때에는 법 제67조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.

제25조의 제목 "(감독)"을 "(감독 등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"업무를 감독한다"를 "설립·운영 등 공사의 업무를 관리·감독한다"로 한다. 제31조를 삭제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		
제7조(임원) ①・② (생 략)	제7조(임원) ①・② (현행과 같				
	음)				
③ 제2항에 따른 사장의 연임기	<삭 제>				
준은 「지방공기업법」(이하					
"법"이라 한다) 제58조제4항					
<u>에 따른다.</u>					
제8조(사장) ① 공사의 사장(이하	제8조(사장) ①				
"사장"이라 한다)은 시장이					
임면하되, 사장을 임명할 때에					
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					
자 중에서 임명한다. <u><단서 신</u>	다만, 제2항에 따라 사장을 연				
<u>설></u>	임시키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				
	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				
<u><신 설></u>	② 시장은 「지방공기업법」				
	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58조				
	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사				
	<u>장을 임기 중에 해임하거나 임</u>				
	기가 끝나더라도 연임시킬 수				
	있다.				
<u>②·③</u> (생 략)	<u>③</u> ・ <u>④</u> (현행 제2항 및 제3항과				
	같음)				
제9조(이사) ① 이사는 상임이사	제9조(이사) ① 이사는 상임이사				
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되, 비	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되, 비				

개 정 아

상임이사에는 해당 공사의 업무 와 관련이 있는 3급 이상의 공 무원 중 시장이 지정하는 2명과 세무 또는 회계전문가, 농수산 유통 관련분야 전문가를 포함하 고 사장을 포함한 <u>상임이사의</u> 정수는 이사 정수의 2분의 1 미 만으로 한다.

②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 되. 상임 이사를 임명할 때에 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.

- ③ (생 략)
- ④ 상임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🏻 ④ ----- 정관에 따라 -----바에 의하여 공사의 업무를 분 장하다.

제14조(이사회) ① (생 략)

② 이사회는 사장과 이사로 구 성하되 성비를 고려하여 특정 성(性)이 60%를 초과하지 않도 록 노력하며, 공사와 거래상 밀 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이 사가 될 수 없다.

③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이사 <삭 제>

상임이사는 해당 공사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시장이 지정하는 3 급 이상의 공무원과 세무 또는 회계전문가, 농수산유통 관련 분야 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한 다.

- (2) -----상임이사를 -----
- ③ (현행과 같음)

제14조(이사회) ① (현행과 같음) ② 이사회는 사장을 포함한 이 사로 구성한다.

현 행	개 정 안
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	
의결을 통해 선임하며, 선임된	
비상임이사는 그 임기동안 의장	
<u>이 된다.</u>	
④ 의장은 이사회의 회의를 소	<삭 제>
집한다. 다만, 이사회의 의장으	
로 선임된 비상임이사의 신분과	
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	
소집하고 주재한다.	
⑤ 이사회는 사장을 포함한 재	<u><삭 제></u>
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	
하고,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	
로 의결한다.	
⑥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	<삭 제>
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	
⑦비상임이사에 대하여는 이사	<u><삭 제></u>
회 출석 등에 따라 회의참석수	
당, 여비 등 실비 이외에 예산	
의 범위 내에서 이사활동에 필	
요한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	
<u>수 있다.</u>	
⑧ (생 략)	<u>③</u> (현행 제8항과 같음)
제22조(손익금의 처리) ① 공사는	제22조(손익금의 처리) 공사는 결
결산한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	산한 결과 이익 또는 손실이 생

혀 했 개 정 아 긴 때에는 법 제67조에 따라 이 는 다음 각 호의 순위로 이를 를 처리한다. 처리한다. 1. 이월결손금의 보전 2. 이익준비금의 적립 3. 이익배당(시 일반회계에 납 입) 4. 정관에서 정한 적립금의 적 립 ② 공사는 결산 결과 손실이 생 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로 이를 처리한다. 1. 사업준비적립금으로 보전 2. 이익준비금으로 보전 3. 결손금으로 차기이월 제25조(감독) ① 시장은 공사의 제25조(감독 등) ① ------업무를 감독한다. 설립 · 운영 등 공사의 업무를 관리 · 감독한다. ② (생략) ② (현행과 같음) 제31조(과태료) ① 시<u>장은 법 제8</u> <삭 제> 2조제2항에 따라 시장의 검사를

거부 ·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

대하여 과태료를 부과 · 징수한

② 과태료의 금액은 해당 위반

다.

현 행	개	정	안	
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				
작하여 정하되, 과태료의 부과				
기준은 영 제79조제1항을 준용				
하고, 그 밖의 과태료의 부과 •				
<u>징수에 관한 사항은 「질서위반</u>				
행위규제법」을 따른다.				